

사회규범적 맥락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다차원적 실현범위 연구: 한-미-EU 비교 및 법제, 기술, 서비스 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심미나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social normative context: focusing on comparison of Korea-US-EU and the legal, technical, and service market

Mina Shim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Sungkyu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잊혀질 권리, 표현의 자유, 삭제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구현모델과 서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cope of realization of multiple perspectiv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more realistic than the ideal information deletion concept. We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 and technology/service trends, and reflected the classification realization level of service realization, processing type and information characteristic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and legislative/technical factors for multi-level scope analysis. As a result, we have presented a matrix of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scope of diversified regulation by the subject of protection. This study will be extended to the convergence of law and engineering, and will contribute to the prediction of social cost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by identifying the scope of 'deletion rights'.

Key Words :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Speech, Right to Delete,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PIP),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mplementation Model and Servi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5S1A5A8018555)

*Corresponding Author : Mina Shim(mnshim@sungkyul.ac.kr)

Received April 02, 2018

Revised April 13,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조직의 개인정보처리가 증가하고 SNS와 같은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흔적은 거의 모든 정보행태로 기록되어지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흔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과 범위 정립이나 실현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EU를 선두로 법제화 촉발로 국내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스페인 곤잘레스 v. 구글 스페인'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현범위나 방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구글은 판결이후 주당 약 530만 건의 정보 삭제요구를 처리하고 있는데, 발생비용과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 개인정보처리 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다.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잊혀질 권리의 입법과 적용이 현안이 되고 있다. 2014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유출정보 삭제 및 파기의 본격적인 대응을 표명하였다. 대책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이 공개 웹사이트에 노출된 경우, 웹사이트나 검색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등 필요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검색, 조회, 삭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회규범적 맥락에서 잊혀질 권리의 실현범위를 구체화하는 연구는 토대연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히 요청접수와 삭제작업이 아닌, 복제 또는 이전된 개인정보 추적과 완전삭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삭제처리의 부담과 실현가능성을 명확한 범위나 실현방법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 새로운 법리로 확대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가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 개념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제도나 기술,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연구가 되도록 보다 다각적이고 국내 사회규범에 적합한 실현범위를 규명하고 체계화하는데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국

내정책 발표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EU나 미국, 우리나라가 각국의 사회규범을 기준으로 어떻게 잊혀질 권리를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조사, 분석하고, 법률과 제도,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규범적 요구범위를 살펴본다. 특히, 요구분석 관점의 다각화를 위해 소유권자인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재게시나 가공을 고려한 제3자인 저작자, 서비스제공자나 플랫폼제공자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고 그로 인한 상충문제 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형 잊혀질 권리실현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명확한 요구범위를 밝히고자 한다. 즉,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 범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를 도출한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 미국, EU를 대상으로 각국의 사회규범이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개념 등 접근방식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입법원리를 비교분석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시장 등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가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규제범위나 관련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 추세인지 분석한다. 둘째, 잊혀질 권리 관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정보처리 시 보호 및 의무 대상을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잊혀질 권리의 규제범위를 재분석한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서의 다각적 실현범위 규명을 위한 기본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각적 이해관계자 관점의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를 규명하고 실현범위 매트릭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잊혀질 권리 관련 연구동향

그동안의 잊혀질 권리 개념 및 법제 연구는 대부분 초보적 단계로 주로 행위규범의 구현에서 삭제권, 처리권의 적용에 대한 비판과 문제를 핵심쟁점으로 삼았다.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삭제

거부할 경우의 대체수단 연구, 잊혀질 권리의 망각 문제에 있어 일반적인 프라이버시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연구, 대중의 알 권리 차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잊혀질 권리 간의 충돌 문제에 대한 연구가 핵심 연구로 다루어졌다[2-7].

입법논리 중심의 연구는 최근 들어 협소하게나마 적용연구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다.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기록 행위에서 잊혀질 권리로 이해되는 삭제청구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삭제나 파기 행위에 대한 규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개인에 관한 기사DB나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유형 등 잊혀질 권리 적용의 모호성과 필요조치에 대한 책임 등 현실적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이 있다. 정보생성 단계에서 삭제 시효를 결정해야 하는 등 자기검열의 모순이 발생하는 한계가 존재하나 일부 ‘잊혀질 권리 관리기’와 같은 실질적인 디지털정보 수명부여 기술이 연구되면서 특허출원 중이다[8,9].

2.2 선행연구의 양적, 질적 한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한 학문적 연구가 얼마나 수행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 논문을 중심으로 정규학술단체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정하고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학문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분야 특히 법학의 비중이 72.5%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외의 관련 법제추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각 학문분야별 논문편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인 Table 1에서 보듯이 잊혀질 권리의 응용이나 구현에 관한 공학이나 융복합 연구는 7.5%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

Table 1. Field of Study

Field of Study	Number of Paper				
		N		Percentage(%)	
Social Science	law	58	73	72.5	91.2
	Journalism	7		8.7	
	political science	4		5.0	
	business administration	2		2.5	
	general	2		2.5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3	4	3.7	5.0
	electronic info-communication Science	1		1.3	
	science and technology	2		2.5	
Inter-disciplinary Humanities	philosophy	1	1	1.3	1.3
Total		80		100.0	

았다고 볼 수 있다. 예상과 같이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개념정립 단계이거나 법제화 검토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연구는 잊혀질 권리의 법리적 해석과 문제 분석 등이 주를 이루며, 헌법상 권리해석을 위해 2012 EU 규정(안), EU수정(안) 검토 및 EU사법재판소 판결 평결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주요 요소인 정보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과 파기의무, 공익이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보다는 해결에 필요한 논의를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물론, 실효성 확보에 대한 연구도 있다. 행정적 제재나 구제, 사법적 구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구제 방안 제시, EU수정(안)에서 요구하는 가능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연구도 다루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세부 주제별 심화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잊혀질 권리에 관한 권리범위, 실현범위의 심도 있는 연구는 매우 유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하는 기술적, 서비스적 적용방안의 연구 또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연구임이 분명하다[10].

3. 연구내용

3.1 잊혀질 권리 관련동향 비교분석

3.1.1 한-미-EU의 잊혀질 권리 관련 법제 동향 가. 법제 추진동향

잊혀질 권리 개념은 프랑스 등 유럽이 모태가 되었고 입법화 역시 EU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이나 국내의 경우 입법화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접근방식이 서로 상이하다. 한국, 미국, EU를 중심으로 EU 정보보호규칙(안),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논의, 미국 자율규제적 추진 동향 등을 조사한 결과,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된 2015년도 전후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EU는 잊혀질 권리를 반영한 본격적인 입법화 추진 결과, 2016년 5월에 잊혀질 권리가 반영된 정보보호규칙에 대한 의회 의결이 완료됨으로써 '18년부터는 EU 회원국 모두에 적용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한 소위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 시행됨으로써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1) EU의 법제 추진동향

EU차원에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2010년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11월, 프랑스의 상하원은 ‘잊혀질 권리’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담긴 “현 디지털 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 발의하고, 2010년2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잊혀질권리 보호 위한 MS france를 비롯한 17여 인터넷사업자들이 서명한 ‘잊혀질 권리를 위한 헌장’이 2010년9월 공표되기도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1월 시대변화에 따른 정보보호규칙(안)을 제안하고 제17조에 잊혀질 권리와 삭제할 권리를 규정한 바 있으며, 2012년11월 ENISA는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연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EU 29개 회원국 DPA는 ‘잊혀질 권리’ 관련, 구글과 Bing 등의 검색엔진운영자에 대해 삭제대상 도메인을 전 세계 도메인으로 확대 이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4년11월 결정하였다. 가장 핵심동향으로 2016년5월 EU 의회는 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의결하였고 최근인 2017년 5월 영국 보수당은 총선공약으로서 ‘잊혀질 권리’ 보장할 것으로 포함하였다.

2) 한국의 법제 추진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8월 온라인상 개인정보의 삭제요청권,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검토 착수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2016년 4월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EU, 한국 등 각국들은 법제추진을 통해 잊혀질 권리 실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가 차원의 법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EU-미 세이프하버가 무효화되는 등의 변화에 따라 기업 자율적 차원에서 강화 움직임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접근방식 및 입법원리 비교

EU와 미국은 정보프라이버시 관점의 입법이나 규제 방식에 있어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Table 2에 따르면 국내 적용에서도 역시 개인정보 삭제 또는 처리제한 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Table 2. Method of legislation

Regulation		Right of deletion	Right of restriction of processing	Exception
EU	OECD guideline	△	X	•
	GDPR('16)	O	O	O
US	US Bill of Rights	O	△	X
KR	PIPA	◎	O	O
	ICNA	△	O	O

※ 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 ICNA: Korea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O: Fully Applicable, △: Partially Applicable

시대의 변화에 따라 EU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시민의 기본권에 대응하여 2016년 규칙에서는 기존 데이터보호지침(1995)의 프라이버시권 대신 개인정보보호권으로 전환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며 판례 동향을 볼 때에도 개인정보보호권으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잊혀질 권리도 ‘개인정보보호권’의 하나로써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관련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11].

국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에서는 새롭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는 EU와 달리 제3자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 기존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자기게시물의 경우 회원 탈퇴 등으로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이용자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곤란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으며, 접근배제와 함께 검색목록 배제 요청을 포함한다[12]. 이와 같이 국내 적용은 정보삭제권, 처리정지권과 함께 접근배제권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 개방성을 표명하는 인터넷에 대한 태도, 시장을 신뢰하는 사회적 가치와 어우러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저항적 분위기가 매우 강하므로 여전히 기업의 걸림돌로 이해되는 분위기이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EU 세이프하버의 무효화, 프라이버시 쉐ルド 조치, 검색엔진 사업자에 대한 검색결과 삭제결정 등으로 점차 기업중심으로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장치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2 한-미-EU의 잊혀질 권리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동향

가. 실현수준의 단계 구분

한, 미, EU의 특징들이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시장에도 반영되는지를 조사하고, 기술개발이나 서비스 구현 수준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밀한 실현수준의 단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실현수준은 2016년까지의 결과이다.

- 아이디어 개념화 단계
- 특허 출원 또는 등록 단계
- 기술 개발 단계
- 서비스 모델링 단계
-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단계

나. 기술 및 서비스 유형별 실현수준

관련 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를 서비스제공자가 수작업 또는 자동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7개 유형의 국내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관련 기술은 독립된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이나 기능모듈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외 특허 출원 또는 등록을 완료한 후 기술개발에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은 아직까지 자동화된 시스템 형태보다는 기능모듈의 반영 또는 용역 서비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해당되는 현존 기술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제공되고 있으며 Table 3과 같은 실현단계에 이르고 있다.

Table 3. Related technology and service

Type	Step
Digital destruction system	Patent regist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atent Appl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nline Funeral	Service Operation
Online account remove	Service Operation
Online Reputation management	Service Operation
Online portal post deletion	Service Operation
Online portal search result deletion	Service Operation
Messenger's decaying SNS	Service Operation

1) 디지털 소멸 시스템

디지털 데이터에 ‘소멸 타이머’를 장착해 사용자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소멸 시점을 지정해 해당 만료 기한에 데이터가 시한폭탄처럼 소멸하는 방식의 기술을

말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에 TIMER를 장착하고 소멸케 하며, 사용자가 원하면 해당 사용자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삭제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DAS(한), 디지털에이징시스템, 파일에이징서비스, 이미지 인식기반 로그인서비스가 있다. 또한, 포털사의 제휴나 동의 없이 요청에 의해 업로드 데이터를 관리, 소멸시효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기도 한다.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history 관리, 사용자 업로드 데이터의 상태관리, 시물의 소멸시효 알람 및 경보, 자동소멸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잊혀질권리관리기(한)가 해당된다.

2) 온라인 창조 서비스

사망한 회원의 온라인상의 흔적을 삭제하거나 사망후 가족에게 온라인 계정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라이프슈어닷컴/에셋로커(미), 레거시로커(미)가 해당된다.

3) 온라인 계정 삭제 서비스

인터넷, SNS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해주거나 ID/PW를 변경하는 서비스로 페이스북 계정과 내용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웹2.0자살기계(네), 세푸쿠(일)가 해당된다.

4) 온라인 평판 관리 서비스

개인에 대한 온라인상의 평판이나 소기업/비즈니스용 평판을 관리하는 서비스이며, 부정적 검색노출결과나 유출 동영상 등 부정적 온라인 기록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래퓨테이션닷컴(덴), 딜리트미/리무브유어네임(미),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맥신코리아(한), 프라이버시앤컴퍼니(한)가 있다.

5) 온라인포털의 게시물 삭제 서비스

게시된 자신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 작성자라는 사실증명을 기반으로 게시글을 지워주는 서비스로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다음(한)이 제공한다.

6) 온라인 검색결과 삭제 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요청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를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구글/Bing(미)이 해당된다.

7) 메신저의 소멸성 SNS 서비스

SNS메신저에서 송신자가 수신자의 확인시간을 설정해 일정시간 후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파괴’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잊혀질 권리를 서버에 적용하여 저장기간 이후 서버내 메시지를 삭제한다. 특히, ‘스냅챗’의 메시지 소멸기능을 본 따 만든 국내 메신저 서비스로 대화 후 10초 이내에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며,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신자가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메시지 회수기능’을 제공한다. 네이버 라인(Line)의 ‘타이머챗’은 잊혀질 권리가 적용된 서비스로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보낸 메시지는 해당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다. 카카오톡 ‘비밀채팅’ 기능은 대화방 자체를 비밀채팅방으로 개설하고 이방 대화내용은 당사자 외에 볼 수 없도록 조치한다. SK플래닛의 ‘프랭클린’은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로 상대가 메시지 확인 10초 후 대화창과 서버에서 완전 삭제되는 기능과 수신자 미확인 회수기능을 제공, 전송된 사진이나 메시지를 상대 확인 전까지는 흐리게 표시한다.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스냅챗(미), 텔레그램(독), 돈톡(한), 타이머 챗(한), 비밀채팅(한), 프랭클린(한)가 있다.

3.2 개인정보처리의 실현범위 분석

3.2.1 다각적 관점의 이해관계와 규제범위

규제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삭제권과 처리제한권이라는 두 개 권리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대상과 보호대상으로 요구되는 정보 범위 또는 처리 범위를 분류 및 정리하였다. 최근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구체화한 소위 ‘인터넷 게시물 접근배제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7조(처리정지요구권)와 관련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자기게시물 검색목록배제요청권과 정보통신망법 제 30조(이용자의 동의철회)와 관련한 게시판 관리자에 대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에 대한 것이다. EU 정보 보호규칙 제17조의 삭제권과 삭제의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삭제청구권(제36조)와 유사하나 EU규칙에서는 열람철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도 삭제요청권(제44조의2)이 규정되고 있으나 삭제요청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침해사실의 소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Table 4. Target of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Korea

Right Subject	Opponent	Target of protection	Contents
Information Subject	A. Processor	Self-information of Subject	self-information (exclude retention items)
	B. ISP	Self-information of Subject	self-information (exclude retention items)
	C. Board Administrator	the record of the subject	internet self-post, photo, video, post, etc.
	D. Search service provider		internet self-post, photo, video, search information, etc.
Information Subject	E. Board Administrator, Search service provider	post about other people	post about other people of third party
		manufacturing information other people	Imported SNS post, etc.
procurator, survivor	F. Board Administrator	the record of the dead	post of the dead, photo, video, post, etc.
	G. Search service provider		post of the dead, photo, video, search information, etc.
etc.	F. Board Administrator, Search service provider	information containing opinion value	Internet self-publication with comments, comments, etc.

Table 5. Target of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EU

Right Subject	Opponent	Target of protection	Contents
Information Subject	Processor	Self-information of Subject	Self-information (written by other people)

3.2.2 보호 및 의무 대상별 규제범위 분석

분류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보특성이나 처리유형을 고려한 특히 권리행사주체를 정보주체 본인, 위임받은 자 또는 유족, 제3자로 구분함으로써 다각적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4와 Table 5는 각각 국내 및 EU 분석결과이다.

4. 연구결과

4.1 이해관계자 관점의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정립

4.1.1 잊혀질 권리의 사회규범적 방향

EU는 점점 잊혀질 권리를 삭제권과 동일시하는 방향

으로 나가고 있고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보호권의 하나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11]. 미국은 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판례를 통해 볼 때 지속적인 구글 검색목록 등의 삭제명령으로 기업 스스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는 이미 삭제권을 법제화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목적달성(서비스종료로 인한 계약만료), 회원탈퇴나 계정삭제 등의 이후에는 실질적인 삭제방법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 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국내의 잊혀질 권리는 접근배제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실현범위를 도출할 수 있다.

4.1.2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

매트릭스 설계를 위한 기준으로 (a)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을 고려한 분류 기준 및 요소(온라인/오프라인, 자기정보, 인터넷자기게시물/사자게시물, 제3자의 타인에 관한 게시물, 검색정보 등), (b)법제적 적용(규제 및 비규제 범위), 기술적 적용(기술적용, 시스템 운용, 서비스이용)을 분류한 실현범위 매트릭스 설계, (c) 인식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수준, 향후 기대수준으로 범위를 구분 가능하다.

그 결과로써 Table 6, Table 7의 매트릭스(안)을 제안한다. Table 6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Table 7은 사자의 위임자나 유족이 권리행사의 주체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권리행사주체와 그 상대방(권리행사를 요청받아 처리하는 자), 보호대상 개인정보와 그 행사방법, 실현의 시점과 그 처리방식을 반영한 매트릭스(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보주체 본인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과 권리의 행사방법을 고려하되, 행사시점은 (1)~(4)로 구분하고, 처리방식은 (5)~(7)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즉, (1) 서비스기간, (2) 유효기간만료, (3) 서비스만료, (4) 만료이후, (5) 정보삭제, (6) 접근배제, (7) 처리제한으로 구성된다. 그 외 범위는 현재 기대범위에 해당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작업에 의존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추후 자동처리를 위한 시스템운용 또는 기술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Table 6. Subject of exercising right-information subject

Type	Time of exercise				Method of processing		
	(1)	(2)	(3)	(4)	(5)	(6)	(7)
A.	○		○		○		△
B.	○	○	○		○		△
C.	○	○		○		○	
D.	○	○		○		○	
E.				○		○	△

Table 7. Subject of exercising right-procurator, survivor

Type	Time of exercise				Method of processing		
	(1)	(2)	(3)	(4)	(5)	(6)	(7)
F.				○		○	△
G.				○		○	

※ O: Fully Applicable, △: Partially Applicable

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데 있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 개념논의를 벗어나 현실적인 제도나 기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현범위를 다각적 관점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다각적 분석에 대한 접근을 위해 우선 서비스 실현단계를 분류하였고, 둘째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적/기술적 적용을 고려한 분류 기준 및 요소를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에 대한 매트릭스 설계하였고 이로써 현재의 실현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기대수준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이슈는 매우 다양해졌고 각국의 입법 논의 또한 활발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연구결과와 기술적 구현모델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통신 시장의 확대와 산업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학제간 연구, 융합 연구 분야의 연구인력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KISA. (2012). A study on plan to refle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legislative system. KISA-WP-2012-0041.

- [2] J. J. Lee. (2009).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Hansun foundation*, 75-125.
- [3] S. Y. Ko. (2012). The study on the need for the 'right and obligation to forget' (or 'oblivion rights and obligation'). *Journal of a state law examination*, 53(6), 27-35.
- [4] E. B. Ko, K. H. Choi & J. I. Lee. (2012). The difference of 'right to be forgotten' implemented in EU and Korea.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0(10), 34-41.
- [5] NIA. (2014). Analysis of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Implications. *Research on Information Legislation*, 3
- [6] S. Y. Hong. (2014). Argu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focused on the reforming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1-11.
DOI : 10.14400/JDC.2014.12.6.1
- [7] S. Y. Hong. (2014). Right to delete and Right to be forgotten-Discuss on the condition of the right to dele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13-22.
DOI : 10.14400/JDC.2014.12.12.13
- [8] J. W. Moon. (2011).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10(2), 1-37.
UCI : G704-001997.2011.10.2.014
- [9] J. Y. Hoa. (2012).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the Information Privacy in Constitutional Law. *K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39, 567-598.
DOI : 10.17248/knulaw..39.201206.567
- [10] M. N. Shim. (2016). A Study of the Research the Right to be Forgotten from 2010.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26(4), 1073-1084.
DOI : 10.13089/JKIISC.2016.26.4.1073
- [11] I. S. Ham, (2016). The Enactment of 201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the EU and its Implications.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6(3), 411-453.
UCI : G704-002100.2016.36.3.018
- [12]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6). *Guidelines on the right of requesting exclusion of Internet self-acces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eng.kcc.go.kr/user/ehpMain.do>
- [13] E. S. Yoo. (2015). Legal Contemplation for the Right to Be Forgotten: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Subject, Nature of Information, Information Processor, Ways of Posting Information, etc.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14(1), 187-217.

UCI : G704-001997.2015.14.1.005

심 미 나(Shim, Mi na)

[정회원]



- 1996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전산학과(이학사)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공학석사)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공학박사)
- 2010년 9월 ~ 2013년 3월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연구교수
- 2013년 4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기술정책, IT융합보안, 정보법학
- E-Mail : mnshim@sungkyul.ac.kr